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미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76
----------	-----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 심미경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석주,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춘선, 박철성,
박환희, 송경택, 옥재은,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이상욱, 이종태, 홍국표
의원(27명)

1. 제안이유

- 직업계고등학교는 사회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고등학교 진학 집중,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 선호도 감소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운영에 있어 위기에 봉착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가 되도록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교육감의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의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실시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의 지속적인 질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 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국가 및 지역 산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운영 및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직업계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매년 실시한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학 등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
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9. 학생 및 학부모·시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

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3020200000016

비대상 사유서

요청인 : 심미경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선동규 주무관

접수일 : 2023.02.02.

회신일 : 2023.02.10.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5조(활성화 사업)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하지만 예산을 수반한 관련 사업을 기추진 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교육청·고등학교 위주) 관련 예산 ◆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세부내역	예산액
합 계		73,760,881
직업교육운영	경진대회, 전공심화, 교육과정운영, 실험실습 등	16,071,660
취업역량강화	취업지원센터운영, 맞춤형취업기능강화 등	21,122,217
직업교육환경개선	직업계고채구조화지원, 학과 개편지원 등	29,785,886
진로진학교육운영	맞춤식 진로교육, 체험교육 활성화 등	6,781,118

※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서 참조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주 무 관 선 동 규
☎ 02-2180-7953
e-mail : abasiclife@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